학생인권조례 비교

광주 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교육청 자문위원회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학원에 등록하여 재원중인 사람은 학생으로 본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린이를 말한다.	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유치원장 포함. 이하 같다.),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0조(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	제11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13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복착용 여부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등 자기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이하 「학생자치조직」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학교 학생회)** ①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각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학생대표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1. 학생인권 증진 및 학교인권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2.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제시 3. 학교의 생활교육 방안 및 학생규율 제정에 대한 참여 4. 학교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학생의회 의원의 선출 6.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제반 사항 ③ 학생회는 제20조제2항의 권리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한 2. 학생총회·대의원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한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교사의 지정, 예산과 공간의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자치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제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 3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학생회를 경유하여 발의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발의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교원의 동수로 구성된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학교규정 제정·개정안을 검토·확정한다. ④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정 제정·개정안을 검토·확정함에 있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17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학습부진, 폭력, 학교부적응,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는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자기정체성과 역량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제1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16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①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제30조(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 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운동선수,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학교 급에 맞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51조(학생인권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 및 그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5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자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	제56조(보호자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회를 연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①교육감은 이 장에서 정한 인권교육과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의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제4조(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학교 평가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교육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5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감의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심의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권고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4.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5.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교원 대표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학생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교육인권 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 9.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2.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 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 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의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 학교 급에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학생자치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따라 구성하며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본청,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② 당연직 학생의회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생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생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생의원의 임무) ① 학생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원은 학생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의원의 임기 및 자격 상실)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학생의원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학생의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학생의회가 의결한 경우 제33조(학생의회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는 학생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회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속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의 학생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학생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 이상 약간 명(이때 부의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학생의회가 선출한다. ④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1 회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00명 이상의 재적의원의 찬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⑤ 학생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에 따른 센터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부서는 학생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7조(인권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0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2.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4. 학생의회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로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인권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교육 및 법률 전문가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①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계약직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 및 그 처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학생인권옹호관등의 정원, 급여 및 처우기준 구분 / 정원 / 급여 및 처우기준 학생인권옹호관 / 1인 /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교육센터 팀장 / 3인 /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교육센터 팀원 / 12인 / 7급 내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 침해의 조사)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2항의 구제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청원할 권리) ①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청원을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체 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이하 「피해당사자」라 함)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장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

		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직원,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혹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9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장에 의한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이 장의 구제신청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인권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지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42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제2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